##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### 1. 개정이유

○ 인터넷등기소(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인터넷등기소 애플리케 이션 포함)에 의하여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(전자문서형태 포 함)의 종류를 예규에 규정함

### 2. 주요내용

- 인터넷등기소에 의하여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등 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·등기사항전부증명서(현재 유효사항)·등기사항일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·등기사항일부 증명서(현재 유효사항)로 함(5.가.1) 신설)
-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인터넷등기소 애플리케이션에 의하여 발급하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 서(말소사항 포함)·등기사항전부증명서(현재 유효사항)로 제한 함(5.가.2) 신설)
- 3.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

## 4. 신ㆍ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가. 발급가능한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

- 1) 인터넷등기소에 의하여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등기사 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·등기사항전부증명서(현재 유효사항) ·등기사항일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·등기사항일부증명서(현재 유 효사항)로 한다.
- 2) 위 1)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인터넷등기소 애플리 케이션에 의하여 발급하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·등기사항전부증명서(현재 유효사항)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범사업의 특례) 법원행정처장은 수수료 면제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5.가.2)의 개정규정 시행 전 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원 제	ال حال الت
현 행 	개 정 안
5.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사항	5
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록의	
열람	
<u> </u>	가. 발급가능한 등기사항증명서
	의 종류
	1) 인터넷등기소에 의하여 발
	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
	종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
	서(말소사항 포함)·등기사
	항전부증명서(현재 유효사
	<u>항) · 등기사항일부증명서</u>
	(말소사항 포함)·등기사항
	일부증명서(현재 유효사항)
	로 한다.
	2) 위 1)에도 불구하고 모바일
	기기에서 사용되는 인터넷
	등기소 애플리케이션에 의
	하여 발급하는 전자등기사
	항증명서의 종류는 등기사
	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
	함) · 등기사항전부증명서
	(현재 유효사항)로 한다.
<u>가</u> . · <u>나</u> . (생 략)	<u>나</u> .· <u>다</u> . (현행 가목 및 나목과
	같음)

## <의안 소관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=	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
연락처	(02) 3480-1879